

설계자	확인자		
		설계년월일	2019.08. .

방글라데시
다카~마이멘싱(Dhaka~Mymensingh)
도로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

과업지시서
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

목 차

I. 과업지시서.....	1
1. 개요.....	1
2. 과업기간.....	2
3. 과업내용.....	2
4. 과업의 일반원칙.....	7
5. 과업수행 방법.....	10
6. 과업성과품 제출.....	10
7. 보안대책.....	11
II. 예정공정표.....	13

I. 과업지시서

1. 개 요

□ 과업명 : 방글라데시 다카~마이멘싱(Dhaka~Mymensingh) 도로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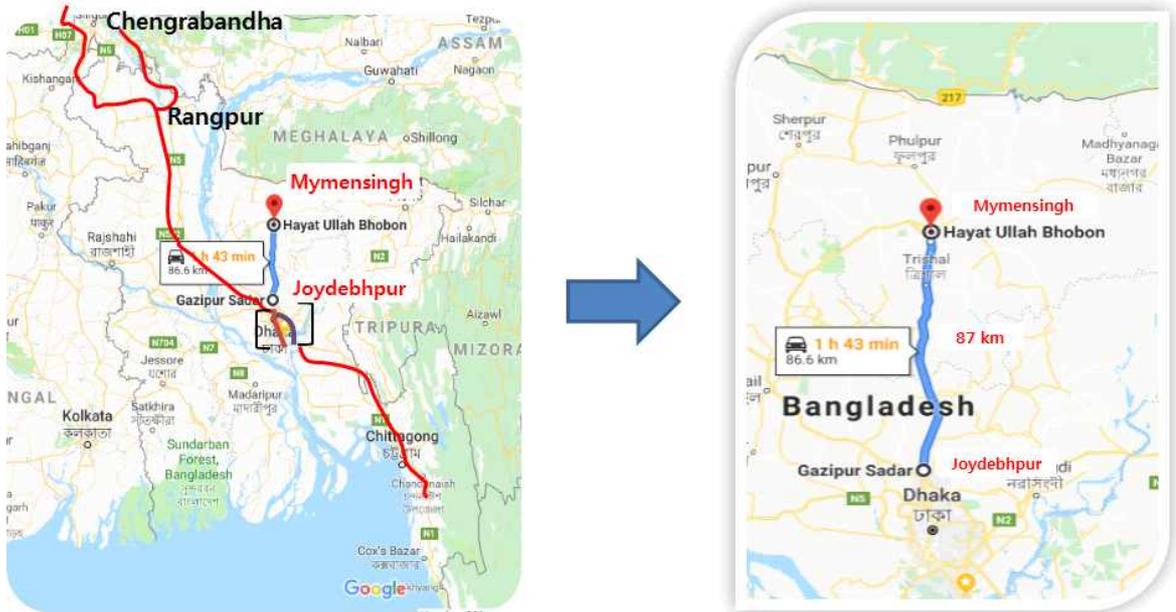
□ 과업목적

- 방글라데시 정부는 비전 2021년 목표인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추진의 일환으로 2010년 PPP*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(PPPA)을 설치하고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PPP 사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전략을 발표함

* Public Private Partnership : 민관합작투자사업

- 현재, 방글라데시 도로청(RHD)은 다수의 PPP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파이프라인으로 보유. 이 중에서 다카~마이멘싱을 포함한 2개 프로젝트에 대해 PPPA를 통해 한국과 G2G를 기반으로 하는 PPP사업으로 추진 희망
- 다카~마이멘싱 구간(87km)은 방글라데시 정부 재정사업으로 기존 도로 개선공사(2차선→4차선 확장)가 완료('16)되어 현재 운영 중이나, 교통량 증가 및 저속차량(화물차량 등) 비중이 높아 서비스 수준이 낮으므로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저속차량 분리 및 완전 출입제한 고속도로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
- 본 용역은 이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(RHD)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는 예비타당성 검토로 사업여건, 기술분석, 투자환경, 법률·제도 및 재무조건 등을 조사하여 투자 타당성을 검증하고 위험요인의 도출 및 분석과 그 위험의 헷지 또는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
- 또한, 도로 인프라 분야 성장성이 높은 방글라데시 시장진입으로 후속사업에 대한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방글라데시 인프라 확충 계획 등 향후 방글라데시 도로사업 장래 추진계획을 조사함으로써 다카~마이멘싱 도로사업의 장기적인 투자효율성을 판단코자 함

□ 사업노선도



※ 본 사업의 배경 및 과업내용, 제안서 작성을 위한 이해 증진을 위해 추가자료 제공이 가능하오니, 필요하신 입찰참가자는 다음으로 요청하시기 바람

(주의: 제공자료는 본 입찰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입찰자(또는 입찰과 관계된 그의 임직원) 외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음)

☎ 02-6746-7367, 7370 (sm.hur@kindkorea.or.kr, mj.kim@kindkorea.or.kr)

2.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24일까지

3. 과업내용

1) Part 1.

□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

- 사업추진 배경, 사업개요(규모, 입지, 기간 등), 사업환경(사업대상 국가 및 지역의 인구, 도시, 문화, 기후 등)에 대한 전반적 분석
- 도로 인프라 개발계획과 사업대상지 주변의 도로 인프라 현황·계획 조사
- 사업구간(Dhaka~Mymensingh)의 도로현황 및 개발계획 분석

- 사업지역 기본여건, 주변환경, 노선의 경제적인 효과 등

□ 기존 자료 검토 및 분석

- 관련 사업 보고서 등 분석
 - 교통량 현황 분석
 - 도로 개선·확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

□ 기술분석

- 건설부문 조사 및 분석
 - 사업지역의 토지확보, 민원, 환경 및 기상조건, 지질 등 공사수행여건 검토
 - 건설비 산정
 - 설계비, 용지보상비, 공사비 등의 적정 금액
 - 도로 선형, 지장물, 지질조사 및 환경 등 자료
 - 포장 등 주요시설물 재료원 및 수급성
 - 기타 건설시 필요한 적정 공사비 검토
 - 사업 관련 도로선형, 시설물계획 및 진출입계획 등의 자료 수집 및 적정성 검토
 - 공사수행여건을 고려한 예상 공정계획 (공사기간 등) 검토
 - 연약지반 등 사업구간 지반조사 및 발주처 지반조사자료 수집, 검토
- 설계계획 제안
 - 기존 4차로 도로를 설계속도 100km/hr의 4~6차로 고속도로로 개선을 위한 기하 구조 개선 검토
 - 저속차량과 고속주행 차량을 분리할 수 있는 서비스 도로 설치 계획
 - 주요 교차로 입체화 및 마을 분리구간 횡단시설 설치
 - 통행료 징수 시설(요금소), 휴게소, 과적차량 단속시설 등 설치
 - 기존 교량 및 통로박스의 확장 또는 업그레이드 필요성 검토
 - 완전 출입 제한 도로로 변경을 위한 가드레일, 가드웬스 등 설치 검토
 - 지능형교통시스템(ITS) 및 교통관리센터(Traffic Control System) 설치
 -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시설 설치 검토 등

- 지반분야 조사
 - 인근 지역 기 조사 자료수집 및 검토를 통한 지반 프로파일 작성
 - 지형, 지질 자료 수집 및 분석
 - 지반 재해 가능성 분석
 - 현지 지반현황을 고려한 비탈면 검토
 - 필요 시, 대표구간의 현지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수행
- 운영부문의 조사 및 계획 수립
 - 발주처 운영비용 분석자료 및 관리기준 자료 수집
 - 운영조직, 주요 유지관리 장비, 종사자 인건비 등
 - 계절별 유지관리 특이사항
 - 유료도로 운영현황 조사, 관리체계 및 시스템 수립
 - 통행료 수납 및 교통관리 등 시스템 도입·운영 등
 - 유료도로 재난, 긴급구조 시스템 등
- 교통수요 관련 계획 수집 및 분석
 - 교통시설 계획, 인구, 차량대수 및 향후 전망자료
 - 교통여건 조사 및 답사
 - 교통관련 현황과악을 통한 차종별 분담비율
 - 사업지역 도로망, 도로이용, 토지이용 등 교통관련 현황 조사 및 확인 등
 - 교통수요와 관련된 장래계획 조사
 - 해당 계획지역의 도로 등 교통인프라 관련된 장래 개발계획 등
 - 사업부지내 장래 주요 토지이용계획 등
 - 노선 경유지 및 인근의 산업단지, 경제지구 등 지정현황 및 계획조사
 - 사업구간 장래교통량의 적정여부 판단
 - 교통량 자료 수집, 교통량 지점조사 등 교통 기초조사, 장래교통량 분석 등
 - 도로상태 개선에 따른 효과 및 기초보고서 작성
 - 대체 노선과 과업 노선간 교통량 전환 분석(차종별)
 - 노선 확장 및 개선에 따른 교통량 증가 추이 분석

2) Part 2.

□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법률 및 제도 검토

- PPP 관련법, 외국인 투자법 등 투자 관련 법률 검토
 - PPP 관련법, 기준 및 지침 등 관련 제도
 -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 및 규제정책(세제, 인세티브, 고용제한 등)
 - 배당금, 자본금 등의 보호 및 환전, 송금 등의 제한
 - 분쟁조정 절차 및 체계
- PPP 입찰 절차(G2G, 수의 계약 포함) 분석
 - 발주방식에 대한 현황 및 근거자료 분석
- 토지보상·이주 관련 법률 및 중앙정부·지자체·발주처 간 업무분장
- 건설 및 운영 관련 법률 및 중앙정부·지자체·발주처 간 업무분장
-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
- 노동 관련 법률 및 제도 검토(노사 문화, 현지인 고용 관련 이슈 등)
- 법 제도의 투명성·공정성 및 법 집행 효율성 검토 (분쟁발생 시 해외 중재 판정 사례 및 가능성 등)
- 사업대상국 기존 도로투자사업에 대한 양허계약(부속서류 포함) 등 주요 계약 적정성 검토 및 법률적 위험요인 도출·분석
 - 불가항력 사안의 처리, 해지시 지급금 등 위험의 분담
 - 환경관련 의무, 제한 또는 면책사항
 - 토지 및 지장물 보상(강제수용), 사업자의 권한범위(공사완공) 및 책임 등
-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률자문

□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반 법률/제도 및 사례 검토

- 외국인 투자 제한, 권한, 제약 (Negative List) 등 외국환거래, 투자금 회수, 세제 관련 쟁점 검토
 - 건설·운영·유지보수에 대한 외국인투자 적법성
 - 외국인 투자 제한 (투자업종, 투자비율, 투자방식 등)
 - 외국환거래 관련 제한 및 절차 (외국환 거래 신고 등)

- 법인세, 부가세, 원천과세 등 관련 조세
 - 법인세 원천징수분-확정분 차액 환급여부 및 Practice 파악
 -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여부 및 Practice 파악
- 세법상 세제 혜택 또는 부담금
- PPP 사례 분석
 - PPP 실시협약 사례 검토를 통한 사업구조 및 사업주 위험 분석
 - 정부의 요금 지급체계 검토 및 본 사업 적용방안 제시
 - PPP 선행사례 자원조달 구조 및 금융조건

□ 재무분석

- 방글라데시 정부 재정 분석
 - 외환 보유고 및 채무 현황 분석
 - 방글라데시 도로투자사업을 포함한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 적정성 등 분석
 - PPP 사업 등 외국 투자사업 관련 정부예산(정부보조금) 지급현황, 미지급 사례, 지급기준 등 조사
- 재무적 타당성 분석
 - 방글라데시 기존 도로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 적정성 등 분석
 - 타인자본 조달방식, 차입조건 적정성 및 위험요인 분석
 - 물가상승률, 이자율, 환율 등 재무모델 주요 가정 사항 및 변수를 고려한 재무모델 작성
 - 주요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(공사비, 운영비, 교통량, 이자율, 물가상승률, 통행요금 등)
 - 건설 및 운영기간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위험도출 및 해소방안 제시 등
 - 최소교통량보장(MTG), 최소수익보장(MRG)과 AP방식에 따른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비교 분석 등 (VGF 포함)
- 방글라데시 금융시장 조사
 - 환헤지상품, 통화스왑, 선물환 등 상품 계약조건, 만기, 비용 등
 - 현지 은행의 USD 환전 가능규모(연간)

-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무적 사항 등

□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

- 사업단계별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회피방안 또는 대응방안 제시
 - 시행사 위험(인허가, SPC 설립 및 출자, 과실송금 등)
 - 시공사 위험(공사완공 지연, 기술위험, 부실시공 등)
 - 운영관리(운영수입/비용 변동) 위험
 - 금리, 물가 변동, 환율변동 위험

4. 과업의 일반원칙

□ 자료활용

- 시장조사와 관계문헌은 국내 기존자료는 물론 외국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하며, 통계 등을 반영할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
-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,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,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

□ 과업수행원칙

- 최종낙찰자(이하 ‘과업수행자’)는 과업수행 상의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
- 본 과업의 수행상 시장조사, 법률, 기술, 수요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 위탁범위 및 내용, 위탁금액, 위탁의 필요성,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함
- 외부업무위탁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여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·기술적 제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

자(계약상대자, 외부전문기관 포함)가 부담해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수행연구자별 세부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하여야 함

□ 과업의 변경

-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, 과업 내용의 추가 등으로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 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당사자가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름

□ 일반조건

- 과업진행에 대하여 우리 공사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책임자와 책임연구원이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우리 공사의 수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각 부문별 과업 항목은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계획에 따라 추진해야 함
-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임의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짐
- 과업수행 상 경비는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사용내역에 대한 집행근거(영수증 등)는 준공 시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음
- 기타 과업의 일반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함

□ 특별조건

-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,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우리 공사가 소유함
- ※ 우리 공사는 과업수행자의 동의 없이 성과품을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음
- 사전승인을 득한 연구인력으로 과업을 수행하며, 변경할 경우, 기존 인력보다 업무수행역량이 높은 자로 한정하며, 우리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□ 성과물 작성

- 사용되는 용어는 국문 및 영문으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, 전문용어는 ()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,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함
- 작성된 최종보고서 원안은 우리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,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 공사에서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·납품해야 함
- 성과품에 대한 작성방법, 양식, 활자크기,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·결정해야 함
- 공정보고, 현지조사,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 등 과업수행자가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보고 및 관련자료는 서면과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목적 달성을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<사업주 수행> 과업(해당 시)의 결과물을 제공받아 과업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최종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함. 이를 위한 세부 방안은 감독관 및 사업주와 협의하여 결정함
- ※ <사업주 수행> 과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수행

□ 기 타

- 과업수행자는 우리 공사가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함

- 용역성과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보안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품을 용역 준공 시에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,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추가로 인쇄할 수 없음

5. 과업수행 방법

□ 전문가 자문

- 본 과업내용 관련 필요 시 관련기관의 실무책임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여 자문계획(자문회의, 토론회, 워크숍 등)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실시하여야 함

□ 현지조사

- 사업대상국의 인문, 자연, 경제, 법률 및 사업환경 조사 등 내실 있는 과업수행을 위해 사업대상국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조사지역 및 일정, 조사자(과업책임자 및 참여연구원, 위탁 외부전문기관 포함) 등 해외조사계획을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실시함
- 과업수행자는 해외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 관련 활동 내역 등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

□ 공정보고 및 추진현황 회의

- 매월 말 기준으로 과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보고를 익월 5일 까지 제출해야 함

6. 과업성과품 제출

□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, 보안각서 및 기타 필요 서류를 첨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착수보고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 주요내용을 확인하고,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, 과업참여자 명단, 과업수행조직의 편성 및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함

□ 중간보고

- 중간보고는 감독관과 보고일정을 협의하고 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, 동 보고서에는 착수보고 시 확인한 주요내용에 대한 과업수행방법을 구체화하고, 검토한 내용의 잠정결론 및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국문 보고서 외 영문으로 작성한 중간보고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최종보고

- 최종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결정하고 조사연구한 최종 내용을 보고해야 함. 단, 최종보고에서 제안된 수정 내용을 감안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함
- 최종보고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성과물작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20부를 제출하여야 함. 또한 최종보고서, 기타 참고자료 및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 - 해당 사업의 현지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국문 보고서 외 영문으로 작성한 최종보고서, 요약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

□ 수정보고서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5개월 이내에 추정수입 및 운영비 추정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 공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이 때 수정보고서, 수정 참고자료, 수정 재무모델의 전자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
7. 보안대책

- 과업책임자는 국토교통부보안업무시행세칙 제54조(용역업체에 대한 보안

대책)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동 세칙에 의한 보안각서(별첨)를 제출받아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

- 과업수행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, 분실,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,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, 대외비와 일반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
-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고,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안규정 이행여부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
- 최종보고서 등 성과물(확정안 포함)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생산·관리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,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(업체명, 인가근거, 참여자, 발간일자) 및 원지, 폐지,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함
- 과업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되, 정규직원에게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
-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때는 필요한 최소부문만 생산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,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짐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보안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함
- 과업내용 중 일부를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거나, 외부기관에

- 의뢰하여 과업을 수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보안대책을 수립/시행하여야 함
- 성과품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

II. 예정공정표

항목		1개월		2개월		3개월	
1. 기초자료조사 / 기존 자료 검토		[Progress bar]		[Progress bar]			
2. 기술 분석		[Progress bar]		[Progress bar]		[Progress bar]	
3. 법률 분석		[Progress bar]		[Progress bar]		[Progress bar]	
4. 재무 분석		[Progress bar]		[Progress bar]		[Progress bar]	
5. 보고서 작성						[Progress bar]	
보고회		착수 보고			중간 보고		최종 보고
과업 진도율	당기	30		30		40	
	누적	30		60		100	